

실감미디어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2021. 6. 23.)

(제명변경 2023. 6.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을 수행하는 실감미디어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2.>

제2조(업무)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 운영기획 <개정 2023.6.22.>
2. 사업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3. 혁신융합대학사업의 성과 확산
4. 그 밖에 혁신융합대학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2.>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사업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지원팀을 둔다.

제4조(단장 등) ① 사업단에 사업단장을 두며, 사업단장의 임기는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 사업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6.22.>

② 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역할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2. 사업단 예산 편성 및 집행, 보고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인력의 임용추천 및 근무평정
4. 사업단 내 시설 및 공간 관리
5. 사업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6. 사업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7.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수행

③ 사업단에 사업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사업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8.31.>

④ 사업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사업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8.31.>

[조명변경 2022.8.31.]

제5조(사업단 행정지원)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팀장과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6.22.>

제3장 위원회 <개정 2021.12.29.>

제1절 사업관리위원회 [본결신설 2021.12.29.]

제6조(설치)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2023.6.22.>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개정 2021.12.29.>

③ 사업단장, 교무부처장, 교육과정평가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1.12.29.>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사업지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배분 및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확산, 협력 및 중복에 관한 검토
4. 관련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
6. 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9.>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본결신설 2021.12.29.]

제9조의2(설치)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에 관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22.>

[본조신설 2021.12.29.]

제9조의3(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연차별 사업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9.]

제9조의4(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교육과정 설계와 구성 및 환류에 관한 사항
2. 마이크로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공(연계 및 융합 포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석사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2.>

[본조신설 2021.12.29.]

제9조의5(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4장 삭제 <2021.12.29.>

제3절 자체평가위원회 [본질신설 2021.12.29.]

제10조(설치)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에 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22.>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연차별 사업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개정 2023.6.22.>
2.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지표 적정성 및 성과 달성에 대한 평가 <개정 2023.6.22.>
3.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개정 2023.6.22.>
4.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2.>
5. 그 밖에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 자체평가 및 컨설팅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2.>

제13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단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대외협력위원회 [본질신설 2021.12.29.]

제13조의2(설치)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의 관·산·학·연 및 국내외 협력을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22.>

[본조신설 2021.12.29.]

제13조의3(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연차별 사업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9.]

제13조의4(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사업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참여대학간 진로·취업·현장실습 협의체 조직에 관한 사항
4. 산업계 연계협력 조율에 관한 사항
5. 산업협회, 학회,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산업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6. 산업계 수요와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등 환류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2.>

[본조신설 2021.12.29.]

제13조의5(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5장 보칙

제14조(재정 및 회계) ① 사업단 재정은 국고지원금으로 한다.

② 사업단 재정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별도 혁신융합대학사업단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12.29., 2023.6.22.>

제15조(운영세칙)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29.>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8.31.>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6.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명은 다른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